



I. 머리말

2011년도는 단일법이던 지방세법이 60여년 만에 지방세 3법으로 분법, 시행되면서 지방세정이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하는 원년의 해이다.

그러나, 10년만에 찾아온 한파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지속 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 인플레이션 위험, 구제역 확산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2011년도가 시작되었다.

이런 불확실한 시장경제 속에서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지방세정 운영을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세수여건 개선노력과 더불어,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지방세제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채무 문제는 이미 재정건전성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과표 양성화,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G20 정상회의 개최, 한미FTA 비준 등으로 인해 주요 세제의 선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공정사회·친서민 기조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서민의 관점에서 새 지방세법을 해석하고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본 장에서는 2011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을 2010년도 지방세정 운영을 통한 성과와 시사점을 설명하고, 중점 추진할 주요정책과제를 하나씩 밝히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II. 2010년도 지방세정 운영 성과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

2010년도에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취득·등록세 감면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먼저,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한하여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을 2011. 4. 30까지 연장하되,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기존 감면율(4→1%)을 적용하고, 대형주택(전용면적 85㎡초과)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감면(2~1%)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2009년 12월 기준, 123천호의 전국 미분양 주택을 2010년 11월까지 95천호로 23.3% 감소시키는 등 실질적인 미분양주택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0년말 종료되는 주택거래세 감면제도는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일시적 2주택 포함)에 한하여 11년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종전보다 8,700억원의 지방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도록 조치하였으며, 서민층 세부담 최소화와 주택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 미분양주택 현황(2010.11월 현재) 〉

구 분	2008.12	2009.12	2010.09	2010.10	2010.11	2009.12월 대비		전월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 체	165,599	123,297	100,325	99,033	94,539	-28,758	-23.3%	-4,494	-4.5%
수도권	26,928	25,667	29,201	29,334	29,189	3,522	13.7%	-43	-0.8%
지 방	138,671	97,630	71,124	69,699	65,350	-14,985	-31.3%	-2,605	-7.3%
(준공 후)	46,476	50,087	49,626	47,883	46,269	-3,818	-7.6%	-1,614	-3.4%

2. 서민지원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서민이 체감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강화하였다. 우선, 겔로퍼밴 등 서민생계형 차량은 화물차 세액으로 과세토록 하고, 경형 전기차는 일반 경차와 동일하게 취득 · 등록세 면제 조치하였으며, 약 300만개의 소기업과 약 270만명의 소상공인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토록 조치함으로써 서민과 소기업 등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 조치하였다.

둘째, 재개발 주택 철거 토지의 세부담상한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15천호의 재산세 세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공익사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농지 · 임야의 세부담을 완화는 등 토지분 재산세 제도개선을 적극 실시하였다.

셋째, 국토부의 「자동차 전국 등록제」 시행(2010.12.1)에 맞추어 지방세도 전국에서 방문 및 인터넷 신고 ·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 · 도간 MOU체결, 자동차 등록수수료 인상,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등록 관련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공하였다.

3.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수확충

첫째, 지방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지방세 징수실적 공개, 세무조사, 고액·상습체납자 중점 관리 등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분야에 10대 대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5회 이상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시범 실시하던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3년간 연장 시행토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11월 현재 체납징수 목표액 1조044억원0중 8,380억원(81%)을 징수하는 등 2011.2월까지의 1조1백억원을 징수하여 목표달성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획세무조사로 1,200억원(2010.10월 현재)을 징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환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제지원 조치를 당초 계획대로 2010년 12월 31일 일몰 조치함으로써 재산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감면분 1,803억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고, 새롭게 등장한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ml당 400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원을 발굴하였다.

4. 지방세제 선진화 이슈 선제적 대응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생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cc)에서 친환경 기준(연비 또는 CO₂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공청회 개최, 연구용역, 전문가 포럼 등을 실시하였으며, 중형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하여 ‘전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방안’의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세제개편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아울러, 친환경·녹색 재산세제 개편방안의 연구용역 또한 실시하는 등 지방세제 선진화에 대한 대내외의 다각적인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Ⅲ. 2011년도 정책여건

1.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세수여건 개선노력 필요

위와 같이 지방세 체납정리, 세무조사 등 세정운영상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방세수는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2008년도 45.5조에서 2009년도에는 45.2조로 낮아졌다. 반면 지방세 감면율은 2005년도 12.8%에서 2009년도 25%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레저세 등 신규세원 발굴과 세수관리, 거래세 감면의 합리적 개편 등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세수여건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지방세제 선진화 필요성 증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섰다.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20조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파급시켰지만,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먼저, 기후온난화 예방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한미FTA 협정 이행을 위한 세제분야 개선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선도하는 선진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지방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2011년 지방세정운용 방향

1. 지방세수 확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가. 지방세 과표 양성화 추진

과표 양성화사업은 세원 발굴 및 세율 인상 없이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기타

물건' 과표는 건물·토지 등에 비해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는 행정안전부 최초로 과표 양성화사업비 10억원을 반영하여, 레저시설·요트 등 서민 세부담을 미치지 않고 현실화율이 낮은 '기타물건' 17천여종의 전문 시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년 내 전문 시가조사가 완료되면 2012년부터는 기타물건 현실화율을 현행 26%에서 60~80% 수준으로 연차적·단계적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서 지방세수 6천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세나 각종 부담금, 도시채권 등에서 설정가액으로 활용되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리라고 기대한다.

나. 레저세, 취득세 등 과세대상 확대

'납세의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이며, 조세 행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야 할 부분은 '과세 형평성 제고' 임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과세 형평성을 제고와 함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과제로 현재의 지방세 과세대상과 성격이 유사한 신규 세원을 발굴, 과세토록 추진됐다.

먼저, 경륜·경정·경마 등 사행산업에 부과하고 있는 레저세 과세대상에 스포츠토트와 카지노를 추가하여 스포츠토트는 총매출액의 10%, 카지노는 순매출액의 5%를 과세함으로써 연간 3,900여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골프·콘도·승마 등 회원권과 성격이 유사한 고가·고급 체육시설 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현황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다. 한미FTA 관련 주행세의 합리적 개편

주행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난 1999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자동차세 세수신장 및 한미FTA 등에 따른 세수 증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주행세 배분금액을 살펴보면,

총 세수 3.3조원중 자동차세 보전금은 8,442억원이며, 유가보조금 2조원, 한·미 자동차협상 2,900억원, 중고차 감면제도 3,342억원 등, 대부분이 운송업, 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됨으로써 지방세수로서의 기능도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2003년도에 결정된 자동차세 보전금 정액배분 방식을 그동안의 자동차세 세수 규모 증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가보조금은 물가억제 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국가 재원화하여 국고로 보조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라. 체납정리, 세무조사 등 세수관리 강화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2010.7)으로 촉발된 지방재정건전성 문제는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더불어, 체납정리 · 세무조사 등 지방세 세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마디로 나갈 돈은 줄이고, 받을 돈은 받아야만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도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2010.12.14현재) 〉

(단위 : 천만원, 명, %)

총 계	명단공개 제외					명단공개 대상					
	소 계	1~2	2~3	3~5	5~10	소 계	10~20	20~30	30~40	40~50	50이상
98,249	90,405 (92.0)	48,361 (49.2)	17,272 (17.6)	14,361 (14.6)	10,411 (10.6)	7,844 (8.0)	4,644 (4.7)	1,327 (1.4)	630 (0.6)	367 (0.4)	876 (0.9)

또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세 체납징수실적 공개제도를 시행한다. 연 2회 공개되는 체납징수실적 공개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징수실적과 체납정리실적 · 순위, 과오납 현황 등이 포함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고, 시 · 도는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5회 이상 자동차세·취득세 등을 체납한 차량의 등록번호도 일반 국민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체납정리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돈은 확실히받도록 하겠다.

아울러,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대기업·기획 부동산회사 등의 취득세 신고, 감면요건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기획과제를 발굴하여 표준 조사기법을 마련한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토록 준비하고 있다.

2. 뉴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세제 개편 추진

가.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

EU 27개국중 17개국은 자동차세제 과세기준으로 연비 또는 CO2 배출량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을 배기량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집중 실시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에 따라 글로벌 의제로 등장한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배기량(CC) 기준의 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을 연비 또는 CO2 배출량 기준의 친환경 과세기준으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세제지원을 통해 고연비·저CO2배출 자동차의 생산과 구매를 유도하고, 한미FTA 협정과 조화되는 세율체계를 마련토록 하겠다.

또한, 중형전기자동차의 상용화가 임박해 옴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범위 및 개념을 규정하고, 차량 크기나 출력 등 새로운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나.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차등과세 도입 추진

현 정부는 ‘친환경·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포한바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등급에 따라 일정비율(10~100%)로 일정기간(3~15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또한, 일본은 녹화시 고정자산세를 경감하는 그린세(미도리세)를 도입·운영중에 있다. 국가정책에 부합하

고 국가비전을 국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산세제의 환경친화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서 인증하는 친환경건축물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 건축물 신축으로 증가되는 재산세 과표 상승분만큼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다. 토지분 재산세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2011.1.1)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는 토지분과 건물분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그동안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온 토지분 재산세의 적정성을 재검토,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일괄 정비를 추진하겠다.

항만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토지 등은 분리과세를 지속 적용하되, 수익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 다만,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토지 및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용 부속토지 등은 기존 세제지원 취지를 반영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정책 및 관계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축용 토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골채채취용 토지, 폐기물매립장용토지는 별도합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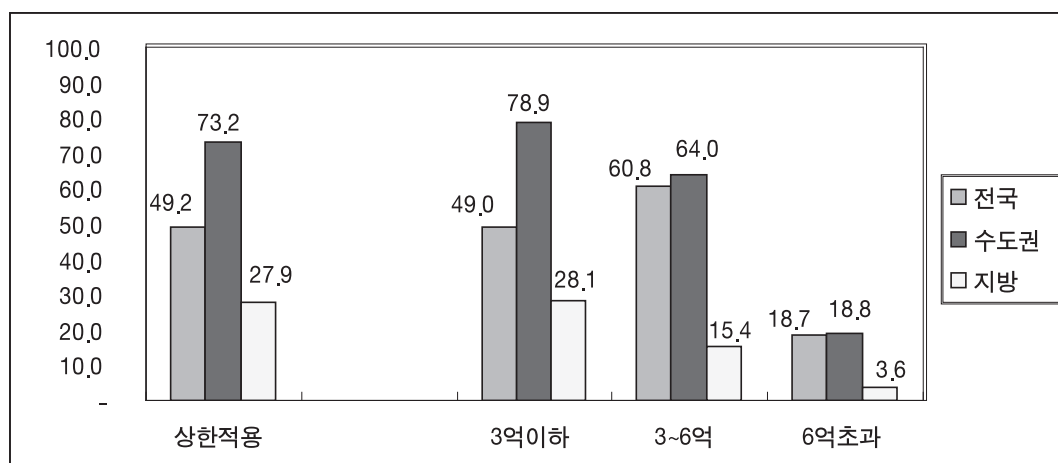
우리부와 대법원, 조세심판원 등 관련기관간 재산세제 법령해석이 상이한 경우 등 불합리한 세정운영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입법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 개선

세부담상한제도는 지난 2005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세부담이 과표와 세율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세부담상한에 따라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세액산출 구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더불어, 납세자간, 지역간 과세 불형평을 야기하여 “동일가격·동일세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등 공평과세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비정상적인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고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현행 세부담상한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적용 현황 〉



첫째, 재산세 납세자의 10.7%가 50%이상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 법정세액보다 세부담이 크게 낮은 주택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둘째, 세부담상한 적용대상 주택비중이 수도권은 73.2%, 지방은 27.9%로 수도권 지역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2011년도 상반기중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3. 친서민을 위한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방안 마련

2010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등록세 50%감면은 최근 주택경기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거래세 감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억이하 1주택 취득에 한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조치 하였다.

따라서, 연내 2012년 이후의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째, 2011년 세제감면 혜택 적용에 따른 주택거래량 월별 추이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거래 동향, 2010.8.29부동산 대책(“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 등 주택 거래세 감면효과 및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분석 · 검토하겠다.

둘째, 2011년도 감면제도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별 세수 증감현황, 2010년 대비 지방재정 여건의 개선여부, 중장기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셋째, 이러한 분석 ·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이후 주택 구입자의 세부담 분석, 서민 지원 필요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세부담 적정성을 고려하여 친서민 · 공정사회 등 국정운영 기조 반영, 감면 종료 또는 재연장 여부, 감면을 조정 여부 등을 종합한 개편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4. 지방세 납부관련 대국민 편의증진 추진

가. 지방세 부실과세 관리제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위주의 무리한 과세, 비과세 · 감면자료 관리소홀 등에 따른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사후평가제도’를 강화하겠다.

지방세는 주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는 행정행위이나, 잘못된 조세행정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오히려 주민의 몫으로 남는다. 따라서 지방세 부과 · 징수행위에 대한 세무공무원과 과세권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중과세, 불복청구로 인한 감액분, 위법 · 부당과세의 취소 · 경정결정분 등

지방세 총 부과액중 과·오납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세 부실과세 감소노력도 지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지방세 부실과세 감소 노력도의 지표를 연 2회 자치단체별 실적공개 및 우수단체 표창 등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

2)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 개선

지방세정 운영상 납세자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화를 활용한 세정운영 홍보를 강화하겠다.

첫째, 국세는 이미 국세기본법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칭) 지방세법령해석 심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내에 설치하고, 관련 위원을 법률·세무·회계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상이한 지방세 관계법 해석사례 조정 및 세무관행의 변경 등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

둘째, 비과세·감면은 유형이 복잡·다양하여 납세자가 요건을 충분히 알기 어려우며, 사후에 과세권자의 추징에 따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납세자별 비과세·감면요건 및 추징사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택스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셋째, 지방세 분법, 지방세목 간소화 등 제도변경사항과 지방세 법령해석, 조세심판원·감사원 결정 사례, 판례 등을 통합·관리하는 지방세 법규정보 DB를 구축, 세무공무원의 법령해석 업무 지원과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V. 맺음말

지방세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자주권 구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

다. 민선 5기가 출범한 우리나라 지방세수는 제도시행 초기인 1995년 15.2조원에서 2010년 47.9조원으로 215% 증가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40개(16%)에 이르고,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52.2%에 그치는 등 아직도 국가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는 78.1:21.9로서, 미국이나 독일, 일본을 말할 것도 없고 OECD 평균(77.4:22.6)에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역 간 세소격차 해소방안 마련,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정에 당면한 현안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과표 양성화 사업예산 10억 반영,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추진, 체납징수 목표액 상향 조정, 지방회원제 골프장 세제지원 일몰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국고에 의존하려고 하면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은 덜 기울이는 면이 없지 않다. 신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세의 오랜 숙원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4대 협의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와대는 ‘한 단계 도약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자세’로 2011년 화두를 ‘일기가성’으로 선정하였다. 공공롭게도 2011년은 새로운 지방세법이 시행되는 해이다.

따라서 신묘년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상생과 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여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지방세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면서도 지난해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방제를 위해 한파에도 불구하고 차량통제, 가축매몰 등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